



노인시설·사회복지기관용

노인학대예방 업무매뉴얼



충청북도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발간사>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김 상 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은 노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양적증가에서 오는 부정적 측면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설 생활 노인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내에서 케어를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질적·양적 부족 현상의 심각성은 시설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문제화와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지원한다는 명목과는 괴리된 영리목적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노인학대 인식부족과 교육부재에서 기인하는 학대발생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학대에 대한 초기 대처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좋은 제도 아래서 양질의 케어가 이루어지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매뉴얼은 제1장 노인전문 사업에 대한 이해를 서두로, 2장 시설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3장 상담사례, 4장 외국의 시설학대사례와 개입지침, 부록과 관련법령으로 구성되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축으로 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시설 및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학대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노인의 권익은 관련 종사자의 문제나 인식 전환으로 개선되기 보다는 사회 구성원 전체, 노인 스스로 인간 존엄과 권리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작과정에서 관련 국내·외 자료 한계 및 수집의 어려움으로, 내용 전반에 걸쳐 미흡함이 있음을 양지바라며, 부족하나마 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유용한 자료로써 활용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목 차

제 1 장 노인보호전문사업의 이해

1. 노인보호전문사업의 의의	11
2. 노인보호전문사업의 목적	11
3. 노인보호전문사업의 내용	12
가.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12
나. 노인학대 개입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12
다. 노인보호전문사업 전산시스템 체계 확립	12
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3
마.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13
바. 노인보호전문사업 협력체계 구축	13
사. 노인학대 관련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	13
4. 노인학대의 이해	14
가. 노인학대의 정의	14
나. 노인학대의 유형	14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	15
가. 노인학대의심사례 업무진행도	15
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수행체계	16

제 2 장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21
2.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22
3. 시설 생활노인 학대사례 개입	23

제 3 장 사례

1. 시설학대의 개입 및 절차	31
2. 신고·접수사례	36

제 4 장 외국에서의 시설학대

1. 미국	41
가. 시설학대의 유형	41
나. 학대와 방임	43
2. 일본	45
가. 요양시설 종사자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의 대응	45
나. 시설 내 학대의 대응	50
다. 시설 내 학대 예방	54
라. 사례	56
3. 외국의 시설노인 학대예방·해결제도 및 프로그램	58
가. 미국	58
나. 일본	60
다. 영국	62
라. 캐나다	63
마. 호주	63

부 록

1. 사례의뢰서	69
2. 노인학대체크리스트	70
3. 노인학대 예방교육 신청서	78

참고자료(노인보호전문사업관련 법령)

1. 노인복지법	81
2.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	92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95
4. 형법	97
5. 정신보건법	99
6. 경찰관직무집행법	100
※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주소록	101

제 **1** 장

노인보호전문사업의 이해



제1장 노인보호전문사업의 이해

1. 노인보호전문사업의 의의

-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노인보호전문사업의 목적

가.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 은폐된 노인학대의심사례 발굴 및 신고된 노인학대의심사례 개입
- 학대피해노인과 그 가족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및 기타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가족역량 강화 지원

나.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상자별 교육

- 지역사회 노인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체계 안내
- 부양의무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노인부양에 따른 이해 증진
- 신고의무자 대상 노인학대의 이해, 신고 및 대처에 관한 교육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전문사업의 유기적 연대 방안 교육
- 기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예방교육

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

-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한 노인학대 인지도 확산
-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 노인에 대한 차별해소와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 노인학대 방지 및 노인인권을 강화,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효행장려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효행교육 실시
-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실시

라. 안전한 노후를 위한 지지적 환경 조성

-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체계 운영
- 지역사회 내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재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 학대피해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지역 지지망 구축
-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

3. 노인보호전문사업의 내용

가.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1577-1389) 24시간 운영
 - 단, 상담원의 업무 시간 이후 혹은 기관 내 상담원이 모두 현장조사를 실시중인 경우에는 신고전화 착신가능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에 대한 적절한 분류 및 처리
- 신고 접수된 사례의 처리에 관한 정확한 기록 및 보존
- 현장조사 실시

나. 노인학대 개입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 학대피해노인의 특성 및 학대유형에 따른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총체적 사정 및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 사례관리에 기초하여 학대피해노인, 학대유형, 가족 및 주변 환경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개입 계획 제공
-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다. 노인보호전문사업 전산시스템 체계 확립

- 노인학대의심사례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전국 노인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월별, 분기별, 연도별 현황 파악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에 대한 연구 분석

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도모
-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1577-1389) 홍보
 - 1389번 의미 : 빨리(8) 구해(9) 주세요
- 대상자별 교육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일반노인 및 일반인, 신고의무자 및 관련기관 종사자, 지킴이 및 자원봉사자 등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따른 노인학대예방의 필요성 홍보
- 노인차별해소를 위한 권익옹호(advocacy) 활동 및 홍보

마.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 「효행장려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효행교육
-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바. 노인보호전문사업 협력체계 구축

-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
- 지역사회,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노인학대위험군 및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
-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사. 노인학대 관련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

- 노인학대전문상담원 교육 강화 및 권익향상
- 자원봉사자 활용 확대

- 노인학대예방 자원봉사단 활성화
 - 교육형 · 복지형 노인일자리 인력(老-老 케어) 적극 활용

4. 노인학대의 이해

가. 노인학대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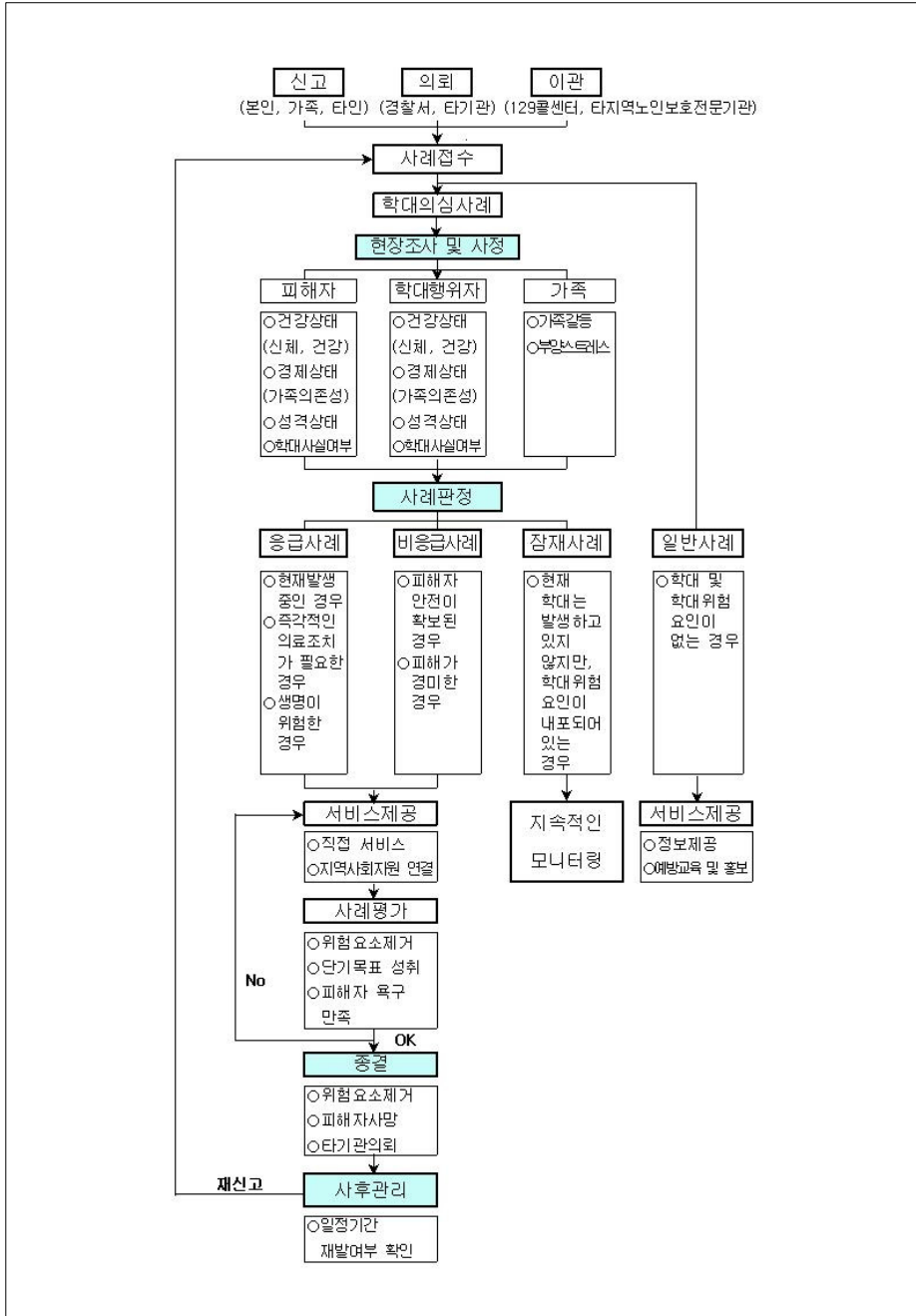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나. 노인학대의 유형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노인의 안전 및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위로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
성적 학대	노인이 성적으로 강제적 폭력 또는 행위를 겪는 것과 노인에게 직접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노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느끼게 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학대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노인 자신의 육체적 ·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총체적 거부 행위(자기방임)
유기 학대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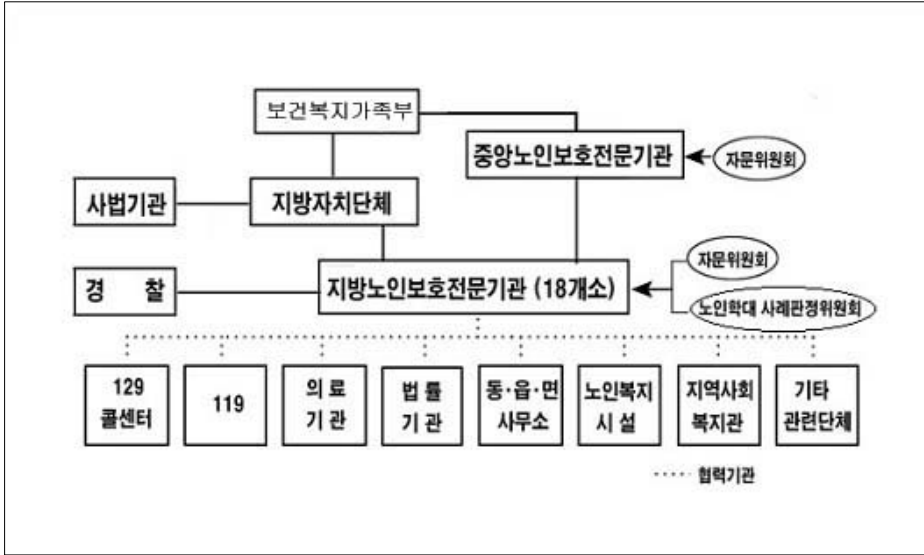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

가. 노인학대의심사례 업무진행도



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수행체계

1) 노인보호전문기관 체계도



2) 기관별 역할

가) 행정기관

<보건복지가족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 중앙 및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 및 감독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시·도>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운영 및 분관 설치 지원
- 시·도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등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 구축
- 노인학대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시·군·구>

-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06. 3월)됨에 따라 전문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피해노인, 학대피해노인의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제반 업무 협조와 학대행위자의 연락처 제공
-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 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 발생가정 및 부양가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 관할지역 내 시설학대 발생 시, 학대피해노인의 전원조치 등 시설학대 개입지원 및 협조
- 노인학대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분관 설치 지원

나) 사법경찰

-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12에 신고된 노인학대의심사례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 조사시 동행 협조
- 학대행위자와의 분리조치 지원 협조
-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 이후 현장조사서 사본을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송부 등

다) 의료기관

- 의료행위 시 학대가 의심되는 노인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의료체계 내에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의료사회사업가로

- 구성된 학대피해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권장
-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라)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 노인학대의심사례 조기 발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 협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 ※ 입소의뢰에 대한 보호 실시 여부를 추후 시설평가에 반영
-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마) 법률기관


- 「노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사법적 소송 진행
- 학대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한 협조
-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에 관한 자문
-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따른 법률자문

※ **학대피해노인 시설보호 조치**

- 지방자치단체 : 노인학대사례의 수요를 예측하여 지역별로 보호시설 1개소 이상 지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노인 시설보호 의뢰서(부록7), 노인학대 사례판정서(부록8)를 첨부하여 보호시설 제출
- 보호시설 : 입소 조치 및 보호
 - 시·군·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우선 지원한 후, 보호자에게 구상권 행사

제 2 장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제2장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가.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학대 전문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나. 시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다. 시군구

-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라. 노인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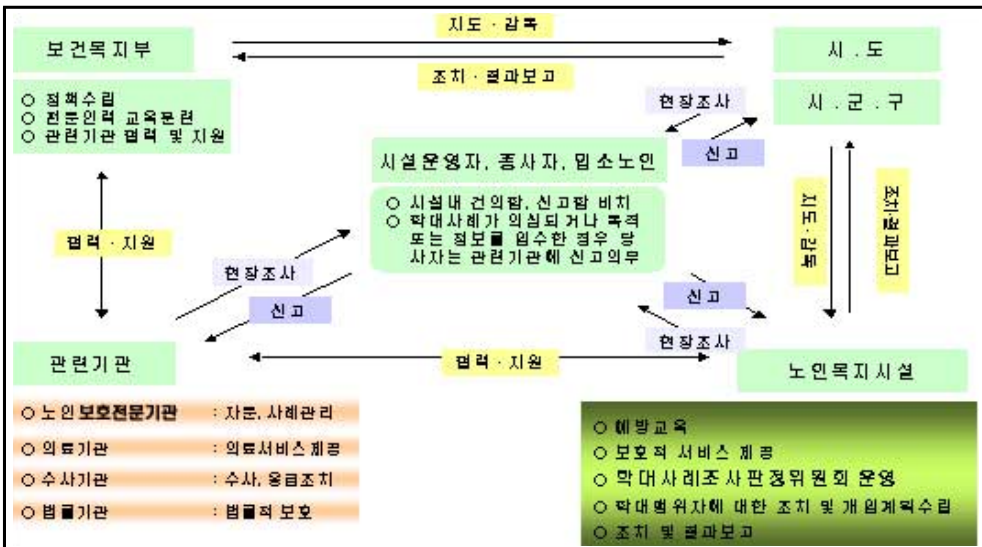
-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마. 관련 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2.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헐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시설 생활노인 학대사례 개입

가.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

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조사와 사정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록 3의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해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협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또는 촉탁의, 물

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등 시설 내부 인사 5인 이하와 외부의 노인학대 전문가와 관련기관 종사자(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 등의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가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 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다.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평가와 사후조치

-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사례평가의 경우 피학대 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을 참석시켜야 한다.
-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장

상담사례



제3장 상담사례

1. 시설학대의 개입 및 절차

가. 사례개요

1) 개요

본 관공서에서 관내 해당 시설의 인권보호 및 관리상태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기에 본 기관에서 동행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상태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사례임. 관할 경찰서에서도 민원이 제기되어 조사 진행 중이었음.

관공서, 보건소 담당자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노인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점검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점검한 결과 방임 및 성적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

사례진행을 통해 지역 사회 내 회의를 통해 입소자 전원이 타 기관으로 전원조치 되어 종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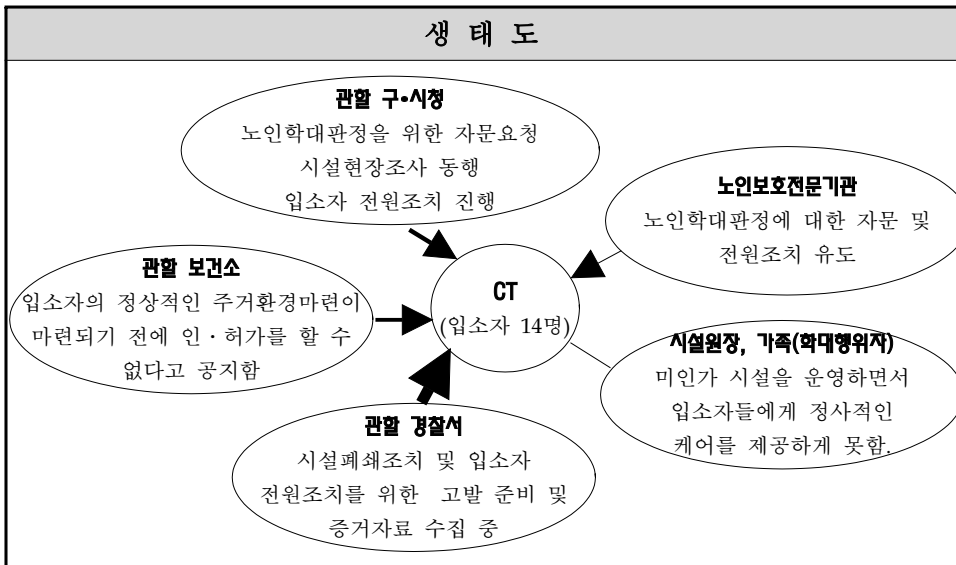
2) 접수사항

- c't : 시설 생활노인 14명 (남 8명, 여 6명)
- 학대행위자 : 원장 (60대, 남)
- 학대유형 : 방임 및 성적학대의 중복유형
- 학대상황 : 입소자들의 간병 인력이 부족하고, 냉·난방시설의 부재 및 개인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접수됨.

나. 사정

1) 생애도 및 C'T 기본사항

가) 생애도



나) C'T 기본사항 및 특성

• c't 사항

- c't들은 치매,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거동이 힘든 경우가 많았음. 입소자는 장애를 지닌 40대부터 9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였고,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상황에서 월 3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입소한 상황이었음.

• 학대행위자 사항

- 학대행위자는 해당 시설의 원장임. 2006년경 노인, 장애인, 노숙 인을 보호하는 생활 시설을 운영했으며 업무규정에 따라 해당시설은 2006년 10월 폐쇄 조치되었음. 당시 전원 조치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허위신고였으며, 일부 입소자는 해당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보호되고 있었음.
- 학대행위자는 개원예정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OO요양병원' 개원을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었음. 내·외부 공사 및 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소자들을 보호하고 있었음.

2) 욕구사정

c't 욕구	신고자 욕구
인지능력 및 언어소통능력이 미흡한 c't들의 욕구 파악 불가능	해당 시설의 폐쇄조치를 위한 노인 학대 판정에 대한 전문가 소견을 요청함.

다. 개입

1) 개입목표 및 계획

- 학대상황판정에 의거한 c't의 전원조치 등 안전 확보
- 가) 관할 지역 내 지역 자원과 연계한 현장조사 실시
- 나) 학대판정을 통한 해당 시설의 폐쇄조치 논의
- 다) c't에 대한 의료조치 및 정부 인가시설로 전원조치
- 라) 시설운영문제로 조사 진행 중인 학대행위자와 관련된 본 기관의 증언

2) 개입 과정

가) 사례접수 및 초기대응

- 관할 관공서에서 해당 시설의 운영상태 및 학대판정을 위해 본 기관에서 현장조사 실시를 요청했음. c't의 객관적인 건강상태 파악을 위해 관할 보건소의 동행을 요청하여 본 기관, 관공서, 보건소 담당자가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나) 현장조사 실시

- 해당 시설은 병원개원을 예정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요양원도 병원도 아닌 미인가 시설이었음.
- '노인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점검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점검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파악함.
 - 적정실내온도유지 불량 :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위생관리 상태 불량 : 오염구역(화장실, 목욕실 등)의 공사가 마무리 되

지 않은 상황에서 입소자가 이용하고 있었음.

- 개인수납공간의 확보 미비 : 시설장의 가족 이외에 중국교포 2명의 관리인원이 있었음.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2명의 관리인원이 14명의 치매 및 거동 불편한 입소자를 케어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 와상·치매 등 거동 불가능한 노인의 개인위생방치, 냉난방시설의 미비 등은 방임상황이었음.

다) c't 건강상태 및 청결상태 확인

- 입소자 상담을 시도하였으나, 대부분의 인원이 본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에 대해 입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거동 불가능한 입소자 관찰시, 하의를 탈의한 사실과 욕창발생 징후 확인함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학대 및 의료적 방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
 - 와상환자에게 소변 줄 대신 임시방편으로 성기에 비닐을 묶어 놓은 것을 확인함.
 - 다른 입소자의 경우, 소변에 의해 바지와 이불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음.
- 위의 상황에서 입소자들의 개인위생이 방치되고 있으며, 욕창발생이 우려되는 등 방임학대가 발생하고 있고, 하의 탈의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함.

라) 지역 내 문제해결방안 논의

- 현장조사 실시 결과, 방임학대 및 성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함. 해당 시설에서 입소자들이 보호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입소자들의 분리방안에 대해 논의함.
- 입소자들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가족 상담을 진행하여 귀가조치 또는 타기관으로 전원 조치되는 대안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해당 관공서와 본 기관 두 기관에서 동시에 개입하는 것이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관공서 측에서 개입한 후 해결되지 않으면 본 기관에서 재개입하기로 협의함.
- 관할 보건소 측에서는 관할 관공서 및 본 기관이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시설의 병원 허가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학대행위자에게 공지할 것임을 포함.

마) 학대행위자 관련 진술조서 작성

- 본 기관의 개입 전부터 해당 경찰서에서 학대행위자 및 시설과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 학대행위자 처벌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하여 본 기관의 현장 조사 실시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을 요청함. 이에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입소자들의 개인 위생관리 상태의 불량 등 방입학대와 성적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한 내용을 진술함.

바) c't 전원조치 확인 - 사례종결

- 해당 관공서에서는 본 기관의 학대판정에 의거하여 해당시설에 입소자 전원조치에 대해 통보했으며, 내·외부 시설이 완공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완비될 경우 인허가 승인이 가증함을 공지했음.
- 입소자 전원이 타 기관(요양병원)으로 이송되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종결함.

라. 평가 및 제언

본 사례는 관할 관공서 및 지역사회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신고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을 보여주었으며, 관련기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입소자들이 전원 조치되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던 사례이다.

과거 미인가 시설 운영 중 미흡한 관리운영으로 인해 시설폐쇄조치 통보를 받은 학대행위자가 입소자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며, 수개월내에 다른 미인가 시설을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 내 보호가 어려워 시설에서 보호되는 치매노인 및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위한 관리감독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제고가 근본적인 예방책이라고 사료된다.

2. 신고·접수사례

〈사례 1〉

- c't : F, 80대
- 학대행위자 : 부양자녀
- 신고자 :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 학대유형 : 유기
- 학대상황 : c't를 시설입소 시킨 후, 비용지불연체 및 연락두절.

〈사례 2〉

- c't : F, 70대
- 학대행위자 : 요양시설
- 신고자 : 아들
- 학대유형 : 방임
- 학대상황
 - 적절한 3끼 식사 제공하지 않음.
 - 적절한 시간에 기저귀 교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욕창 발생.
 -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방치하여 건강악화 및 합병증 유발.
 - 냉방에 거주하도록 함.

〈사례 3〉

- c't : 입소대상자
- 학대행위자 : 시설종사자
- 신고자 : 시설종사자
- 학대유형 : 신체적 학대
- 학대상황 : 야간 당직자가 치매인 고령의 입소 대상자를 밀치거나 넘어뜨림.

〈사례 4〉

- c't : F, 86세
- 학대행위자 : 생활시설
- 신고자 : 손녀딸
- 학대유형 : 방임
- 학대상황
 - 전문적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예: 재활지표없음)
 - 50~60대 고령의 비전문 간병인에 의한 최소한의 보호만 제공
 -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적절한 간병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개별간병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간병이 이루어짐

제 4장

외국에서의 시설학대

.....

제4장 외국에서의 시설학대

1. 미국

가. 시설학대의 유형¹⁾

1) 부주의한 케어

- 욕창이나 초라한 시설과 불결한 의료 시설들과 같은 분명한 상황들은 시설장과 중간관리자 그리고 종사자들의 게으른 태도 때문에 발생한다. 부주의한 케어에 의한 피학대자들은 신체적인 방임과 부적절한 케어 뿐만 아니라 정서적·정신적 방임까지도 당한다.

2) 시설 내에서 부적합한 설비

- 많은 시설들이 그들의 입소자들에게 부적절하고 구식의 시설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클라이언트들이 필요로 하는 케어를 제공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하며 최고의 요양시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3) 수준 이하의 케어

- 낮은 수준 케어의 많은 사례에는 부적합한 영양보충과 부적절한 시설 유지, 불결한 방, 위험한 생활환경과 관련이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러한 시설의 종사자들은 입소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커다란 좌절감과 비참함을 입소자 및 환자들에게 안겨준다. 시설들은 기꺼이 제공해야 할 입소자들의 삶의 수준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릴지도 모른다.

1) 자료출처 : www.resource4nursinghomeabuse.com (Elder and Nursing Home Abuse Legal Guide)

4) 잘못된 의료행위

- 시설의 종사자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의료행위의 실패를 가져온다.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종사하는 사람들은 클라이언트들이 필요로 하는 약을 타서 복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시설에서의 신체적 학대

- 시설에 있는 많은 입소자들은 신체적으로 상처입기가 쉬워서 신체적 폭행의 모든 형태는 심각한 부상을 가져온다.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의적으로 가해진 신체적 상처로부터 신체적 질병을 구분하기는 가끔 어렵다. 때때로 비도덕적인 시설 종사자들은 다른 중간관리자, 가족 구성원, 심지어 피학대자들에게 학대의 증거를 감추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다.

6) 시설에서의 성적인 학대

- 시설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불쾌한 학대의 한 형태가 종사자나 다른 입소자에 의해 발생하는 성적 학대이다. 시설에서의 성적인 학대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성적인 피학대자들이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인 학대에 대한 보고가 드물다. 일부 사례에서는 시설 내 성적인 학대는 피학대자를 수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과다 약물투여를 하게 된다.

7) 정서적 학대

- 정서적 학대는 언어 · 비언적 행동을 통해 괴롭히고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시설 입소자들은 이러한 학대 형태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보복을 두려워하여 학대자 앞에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학대는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더욱 뻔뻔해진다.

8) 유기 / 케어 제공의 실패

- 유기는 시설학대의 고전적인 형태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시설은 심각하

게 인원이 부족한 것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사실적으로 통계상 모든 시설 중 54%는 입소자당 최소 하루 두 시간이하로 케어를 받는다. 다른 숫자상 시설의 31%은 하루에 12분 정도로 짧은 시간동안 케어를 받는다. 유기와 케어 제공의 실패는 감지하기 어렵고 피학대노인에게 소리 없는 고통을 준다.

9) 재정과 물질적 착취

- 불행한 사실은 시설 입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이상 그들의 재정을 돌볼 수 없다. 때때로 부도덕한 사람들은 시설 입소자들을 돕기 위해 고용되었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 착취를 한다.
 - 권한이나 허락 없이 돈을 찾는다.
 - 사인을 위조한다.
 - 돈이나 소유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뺏는다.
 - 입소자를 속이거나 강제적으로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다.
 - 정부보조, 보호자, 대리인의 권리를 함부로 사용한다.
 - 자금이나 소지품이 사라지는 것
 - 추가적인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0) 잘못된 약물 투여

- 입소 노인들은 매우 다양한 필요한 약들을 복용해야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상황은 부적합한 요양사들은 어떤 약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구분하기 어렵다. 시설들은 종사자들이 입소자들에게 적절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적절한 이해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나. 학대와 방임²⁾

The Nursing Home Reform Act of 1987 (1987년에 제정된 시설 개혁 법률) 에 따르면 시설의 모든 입소자들은 양질의 케어를 받고 신체적 ·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거나 향상 시키는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이

2) 자료출처 : www.nccnhr.org (The National Citizens' Coalition for Nursing Home Reform)

런 권한부여는 학대와 방임, 재정적 착취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학대와 방임은 시설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일어나는 행위는 모두 범죄적 행동이다. 입소자들은 그들이 시설에 입소하면 학대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는 학대와 방임에 관련한 입소자의 권리를 나타낸다.

1) Neglect 와 Abuse 가 무엇인가?

- Neglect : 방임은 해를 입히는 것과 고통을 주는 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케어를 하는데 실패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다. 방임은 고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한 요양보호사가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다. 다음의 예시에 따르면
 - 부적합한 몸의 위치 - 사지의 경축 및 피부 손상을 가져온다.
 - 대소변보는 것과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의 부족
 - 요실금의 원인이 되고 입소자들이 침체되거나 흥분되고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배설물 위에 앉게 되어 피부손상이 생길 수 있다.
 - 마시는 것과 먹는 것에 도움 부족
 - 영양결핍과 탈수를 일으킬 수 있다.
 - 걷는 것의 도움 부족 - 움직임의 부족 문제를 가져온다.
 - 목욕의 부족 - 수치스러움과 불결함을 가져온다.
 - 손을 씻기는 나쁜 방법 - 감염을 가져옴
 -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데 도움의 부족 - 퇴보와 고립을 일으킨다.
 - 호출 벨이나 도움의 요청을 무시
- Abuse : 학대는 고의적 고통이나 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정서적, 그리고 성적 학대, 신체적 체벌, 이유없는 격리, 그리고 위협. 예를 들면
 - 시설 종사자 또는 시설 외부로부터 침입자나 방문자로부터의 신체적 학대
 - 치기, 꼬집기, 밀기, 억지로 먹이기, 굶기, 찔쩍 때리기, 침뱉기
 - 정신적 또는 정서적 학대
 - 시설입소자를 몹시 꾸짖기, 무시하기, 조롱하기, 욕하기, 처벌과 결핍 상태로 위협

- 성적 학대 - 부적절한 접촉 또는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
- 수준 이하의 케어는 한사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의 상태들로 빠뜨릴 수 있다.
 -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요실금, 탈수, 욕창, 우울증
- 케어를 하거나 약을 투여, 입소자를 이동시킬 때 거칠게 다루는 것

- 재산 및 자금의 착취(재정적 학대) : 고의적으로 입소자의 동의 없이 입소자의 돈과 소유물을 함부로 놓거나 사용하는 것을 의미, 예를 들면
 - 입소자의 돈을 입소자에게 필요하고 분리된 예금계좌에 넣어두지 않는 행위
 - 입소자의 돈이나 귀금속이나 옷과 같은 개인의 소유물을 훔치거나 빼는 행위

시설들은 연방의 법에 의해서 학대와 방임을 막을 수 있는 개입 전략과 일반적인 모니터링을 필요로 한다. 시설들은 일반적인 기초로 이러한 틀대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2. 일본

가. 요양시설 종사자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의 대응

1) 요양시설 종사자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란

- 요양시설 종사자등에 의한 학대란, 아래와 같이 요양시설이나 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원으로부터 받는 학대를 말한다. 요양시설 종사자등에 의한 학대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부담이 생기기 쉬운 노동 환경 등을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직에 의한 학대는 직업윤리에 비추어서도 용서 될 수 없다.

요양시설	노인데이서비스센터, 노인 단기입소시설, 양호 양로원, 특별 양호 노인 홈, 경비양로원(케어 하우스), 노인 복지 센터, 노인 보호 지원 센터, 유료 양로원, 지역 밀착형 보호 노인 복지 시설, 보호 노인 복지 시설, 보호 노인보건시설, 지역 포괄 지원 센터
복지 사업	노인 주택 생활 지원 사업, 주택 서비스 사업,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 주택 개호 지원 사업,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 개호 예방 지원 사업

2) 요양시설 종사자등에 의한 학대를 발견한 사람의 의무

- 요양시설 종사자등에 의한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고령자를 발견한 사람은, 시에 신고의무가 규정되고 있고, 특히 고령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이것은, 발견자가 자신의 근무하는 시설의 근무자인도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요양시설 종사자등에 의한 학대를 받은 고령자의 경우에도 시에 신고할 수 있다(법 제 21조).
- 상담이나 신고에 의해서 파악한 정보나 신고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되는 민감한 부분이다. 요양시설 종사자가 신고자인 경우, 신고자에 관한 정보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 사실의 확인에 있어서도 그것이 허위 또는 과실에 의하는 것인지 유의하면서, 시설에게는 신고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고자를 보호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 고령자학대방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고 있다.
 - ① 형법에서의 비밀을 지킬 의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요양시설 종사자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의 신고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법 제21조6항)
 - ② 요양시설 종사자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의 신고등을 실시한 종사자등은, 신고 등의 이유로, 해고 그 외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않는다. (법 제21조7항).
- 다만,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신고」는, 허위 및 과실에 의하는 것은 제외된다. 고령자 학대의 사실이 없는데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법 제 21조에 규정하는 신고라고 보지 않고, 과실에 의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해석되어, 불이익 취급의 금지 등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요양시설 종사자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예의 대응

- 신고에 대한 대응은 시설의 소재지의 시읍면이 실시한다. 고령자의 거주와 가족 등의 주소지가 달라 가족 등이 있는 시읍면에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설소재지의 시읍면에 계승하도록 한다.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고령자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도, 시설 소재지의 시읍면이 실시한다.

- 요양시설 종사자등에 의한 학대에 관한 신고는, 서비스에 대한 불평, 허위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고를 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에서 실시하는 사실 확인에 의해, 고령자 학대가 확인된 사례에 관해서 시는 후생 노동성령으로 규정된 학대에 관한 사항을, 현(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 다만, 시설에서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에 현에 보고하여 현과 공동으로 사실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위급한 사례로 현에 의한 신속한 권한 발동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현에 보고한다.
- 요양시설에 제3자의 성격을 가지는 옴부즈맨제도나 학대방지위원회 등의 조직이 정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에 의한 사실 확인 조사와 대면시켜 제3자의 성격을 가진 조직이 사실 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 시설의 운영 개선을 향한 대처가 용이하다.
- 접수 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보호자에 의한 학대 대응의 경우와 같다.

4) 요양시설 종사자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상황의 공표

- 각 시장·도지사는 고령자 학대 방지법에 대해서 매년도 요양시설 종사자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의 상황, 요양시설 종사자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가 있었을 경우에 있던 조치 그 외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법 제25조).
- 공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읍면 또는 시·도가 사실 확인을 실시한 결과, 실제로 고령자 학대를 하고 있었다고 인정된 사례이다. 공표 제도 각 시·도에서 요양시설 종사자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 학대방지를 향한 대처를 착실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요양시설 설치자등의 의무

- 요양시설의 설치자 또는 요양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은 요양시설 종사자등의 연수 나 이용자나 그 가족으로부터의 고충처리체제의 정비, 그 외, 요양시설 종사자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가) 요양시설 종사자의 연수 및 자질 향상

요양시설설치자등은, 고령자 학대 방지등과 관련되는 시설종사자등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시설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연수 기관이나 시설내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대하여 시설종사자등의 참가 기회를 계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고충처리 체제의 정비

시설에서는 고충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불평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운영기준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각 시설에서는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상담 창구의 이용을 안내하여 불평 처리를 위한 대처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정보 공개

시설은 입소하고 있는 고령자의 거주지이므로 외부로부터의 관심이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이나 자원봉사 등 많은 사람이 시설과 관련이 되는 것은 직원의 의식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서비스 평가(자기평가, 제3자 평가 등)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의 서비스 제공 상황을 널리 공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라) 신체 구속의 원칙 금지

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후, 요양보험시설 등에서는 고령자를 침대나 휠체어에 붙들어 매는 등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신체 구속은 입소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상황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로 되어 있다. 신체 구속은 의료나 간호의 현장에서 도와주는 방법의 하나로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해져 온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고령자에게 불안이나 화, 굴욕, 체념이라는 큰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과 동시에 간접의 구속이나 근력의 저하 등 고령자의 신체적인 기능도 빼앗아 버리는 위험성도 있다. 또 신체가 구속되고 있는 고령자를 본 가족에게도 혼란이나 고통, 후회를 주는 실태가 있다. 신체 구속은 원칙적으로 모두 고령자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라

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 본인이나 다른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가 위험에 처해지는 경우 등, 「신체 구속 제로 안내서」(후생노동성)에 있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령자 확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 **신체 구속의 구체적인 예 (신체 구속 제로 안내서 中)**

- ① 배회하지 않게, 휠체어나 의자, 침대에 몸이나 사지를 끈 등으로 묶는다.
- ② 떨어지지 않게, 침대에 몸이나 사지를 끈 등으로 묶는다.
- ③ 스스로 내릴 수 없게, 울타리 (사이드 레일)를 둘러싼다.
- ④ 링겔 경관영양등의 튜브를 뽑지 않게, 사지를 끈 등으로 묶는다.
- ⑤ 링겔 경관영양등의 튜브를 뽑지 않게, 또는, 피부를 긁지 않게, 손가락의 기능을 제한하는 병어리 장갑 등을 끼운다.
- ⑥ 휠체어나 의자에서 흘러내리거나 일어서거나 하지 않게, Y자형 억제대나 허리 벨트, 휠체어 테이블을 붙인다.
- ⑦ 일어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서기를 방해하는 의자를 사용한다.
- ⑧ 탈의나 기저귀를 빼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개호옷(연결옷)을 입힌다.
- ⑨ 타인에게의 폐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침대 등에 몸이나 사지를 끈 등으로 묶는다.
- ⑩ 행동을 침착하게 하기 위해서, 향정신약을 과잉에 복용시킨다.
- ⑪ 자신의 의사로 열 수 없는 방등에 격리한다.

※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의 대응**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의 대응이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돌발 사태에만 한정되고 있다. 안이하게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라고 신체 구속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의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 ① 다음의 3개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요건	유의점
절박성	이용자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등의 생명 또는 신체가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일	신체 구속을 행하는 것으로 본인의 일상생활등에 주는 악영향을 감안하고, 그럼에도 더 신체 구속을 하는 것이 필요한 지 생명 또는 신체가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지를 확인
비대체성	신체 구속 그 외의 행동 제한을 실시하는 것 외에 대체하는 방법이 없을 때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선은 신체 구속을 실시하지 않고 간호하는 모든 방법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밖에 대체 수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다수의 종사자로부터 확인
일시성	신체 구속 그 외의 행동 제한이 일시적인 것	본인 상태 등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는 가장 짧은 구속 시간 대응

② 절차면에서의 유의점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신체 구속의 내용, 이유, 구속의 시간, 시간대, 기간 등을 가능한 상세히 설명하고, 충분한 이해를 얻도록 한다. 그 때, 시설장이나 현장의 책임자로부터 설명을 실시하는 등, 설명 수속이나 설명자에 대해 사전에 규칙화해 돌 필요가 있다. 만일, 사전에 신체 구속에 대해 가족의 이해를 얻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신체 구속을 행한 시점 또는 후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설명한다.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지 아닐지는 항상 관찰, 검토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해제한다. 이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의 심신의 상황 등을 관찰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③ 기록의 의무

불가피하게 신체 구속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상황 및 시간, 그 때의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 이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 평상시 심신의 상황 등의 관찰, 및 구속의 필요성이나 방법과 관련한 검토를 실시해, 순서대로 그 기록하는 것과 동시에 그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 종사자나 가족 등 관계자 사이에서, 최근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나. 시설 내 학대의 대응

여기에서는 시설에 있어서 직원이나 가족 등이 실제로 학대상황에 직면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정의

- 「고령자학대방지법」에서는 고령자의 복지·요양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이하 '요양시설 종사자'라 칭함)에 의한 고령자 학대의 방지에 대해 규정(제2조)하고 있다.

2) 시·읍·면의 상담 및 통보

가) 시·읍·면의 상담 및 통보

- 시설 직원이나 가족은 요양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는 고령자를 발견했을 경우 시·읍·면에 신고하게 된다(제21조). 이 경우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법률 규정은 요양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의 신고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하며, 학대행위를 신고한 다른 종사자들은 해당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고령자학대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발견자	대 응
요양시설·요양사업소 종사자 고령자 학대를 받은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시·읍·면에 통보 및 신고 - 고령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시·읍·면에 통보 - 이외 신속하게 시·읍·면에 통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 신고를 받은 시·읍·면의 직원은 그 내용이 서비스 내용에 대한 고충이거나 허위 혹은 과실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 등 신고자로부터 발견한 상황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것이 요양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나) 상담·신고 내용이 고충인 경우의 대응

- 신고의 내용이 서비스 내용에 대한 고충인 경우 관계 부령(部令)에 근거해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시·읍·면의 신고는 신고를 받은 시·읍·면 직원이 시설에 이어 접수 기록을 작성해 대응을 종료한다.
- 시설 내에 고충 접수상자가 있거나 고충 접수 담당자, 고충 해결 책임자, 제삼자 위원명이나 연락처 등이 게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충처리위원회 외에 옴부즈맨제도에 의한 접수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나 제삼자의 고충처리 기관에서도 고충 접수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도 있다.

※ 옴부즈맨제도

일반적으로 시설에 있어서의 옴부즈맨의 역할은 ①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옹호가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지 ②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지 ③이용자의 고충이나 불평·불만에 대해 옴부즈맨이 이용자를 대변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고충 등에 대해 시설이 성실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④제도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감시·점검·평가를 실시하여 위반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일부 특별양호양로원에서 과격한 신체 구속이나 고령자 학대의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과격한 권리 침해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부적절한 케어의 감

시와 개선을 위해서도 ombudsman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ombudsman에게 특별히 정해진 자격기준은 없으나 인권의식이 높고 공정한 이념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내 보호의 본연의 자세나 사회적 사명에 대해서도 정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시설은 고충접수 담당자 또는 제삼자 위원에 대해 고충접수가 될 경우 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 신청인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노력하게 되나 필요로 하면 제삼자 위원의 조언을 요구할 수 있다. 고충해결이나 개선을 거듭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 운영의 안정화가 확보되는 것부터 기록과 보고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취급한 고충에 대해서는 고충을 접수한 기관이 책임을 가져 시설 등에의 대응을 실시해 개선 결과 등을 신고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다) 시·읍·면에 의한 사실 확인

- 고령자 학대라고 생각되는 상담·신고의 경우 신고에 따른 대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정 내 학대 대응의 경우(「IV고령자 학대예의 대응의 스킴(방법과 유의점)」을 참조.)와 같으나 신고를 받은 시·읍·면은 요양시설·요양사업자 및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고령자에 대해 사실 확인이나 고령자 안전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 확인 등은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 시·읍·면이 당연 실시해야 할 책무이다.
- 시·읍·면으로부터 도예의 보고는 시·읍·면이 실시하는 사실 확인에 의해 양호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가 확인된 사례에 한정하는 것이 기본이나 양호시설·양호사업소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시급하게 도에 보고하여 도와 공동으로 사실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제삼자를 섞은 ombudsman제도나 학대방지위원회 등의 조직이 있는 경우 시·읍·면에 의한 사실 확인과 아울러, 이러한 조직이 사실 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해 해당 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 고령자 본인의 주요한 조사항목

- 학대의 종류나 정도
- 학대의 사실과 경과
- 고령자의 안전 확인과 신체·정신·생활 등 파악
- 서비스 이용 상황 등

※ **요양시설 요양사업소의 주요한 조사항목**

- 해당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상황
- 학대 혐의가 있는 직원의 근무 상황
- 통보 등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실 확인, 상황의 설명
- 직원의 근무 체제 등

※ **조사 시 주의사항**

-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직원이 방문조사 실시
 - 의료의 필요성이 의심되는 경우 간호사 등 의료인의 동행 실시
 - 고령자 요양시설·요양사업소에 대해 방문의 목적이나 조사 사항, 고령자의 권리 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필요
 - 고령자나 요양시설 종사자 등의 권리 및 프라이버시에 대해 충분히 배려
-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고령자나 요양시설·요양사업소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경우 반드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후 개별 사례회의를 통해 학대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고령자 학대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기관에 연결하고, 고령자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응방법을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요양시설 지도를 하는 동시에 도에 보고한다.

라) 시·읍·면에서 도(道)에의 보고

- ‘고령자학대방지법’에는 시·읍·면은 요양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의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제 22조). 시·읍·면이 도에 보고하는데 있어서 별지 양식을 활용하여 수시로 보고하게 되나 악질적인 사례 등으로 도에 의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제휴를 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시·읍·면에 의해서 고령자 학대의 사실이 확인 되지 않을 경우 도·시·읍·면의 직원과 동행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마) 노인복지법 및 요양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행사

- 고령자 학대 방지법에서는, 고령자 학대의 방지와 학대를 받은 고령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시도읍면은, 노인복지법 및 요양보험법으로 규정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고 대응하도록 명시(제24조)되어 있는 것

부터, 고령자 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읍·면은 해당 시설 등에 대해 지도를 실시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및 요양보험법 등에 근거하는 권고·명령, 지정의 취소 처분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고령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고령자 학대 상황의 공표

- 고령자 학대 방지법에서는 시도읍면장이 매년 요양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 상황, 요양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가 있었을 경우에 있던 조치, 그 외 후생 노동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5조)

※ 공표하는 항목

- 요양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의 상황
(성별, 연령, 심리적 상태, 고령자 학대의 유형 등)
 - 요양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가 있었을 경우에 취했던 조치
 - 고령자 학대가 있던 요양시설 등의 종류
 - 고령자 학대를 행한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직종
- 이 공표 제도는, 고령자 학대를 행한 요양시설·요양사업소명을 공표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시설 등에 대해서 제재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령자 학대의 방지를 향한 대처에 착실하게 반영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요양보험의 경우, 요양보험법의 관계법령 등에 근거해, 사실확인 및 지도, 감사나 행정 처분이 행사 되는 것과 동시에 지정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취지가 공표된다.

다. 시설 내 학대 예방

1) 관리직·직원의 연수, 자질의 향상

- 고령자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의 조사 결과로부터도 구속되지 않는 케어 기술이나 학대에 관한 연수 등 직원 스스로가 기존 제도를 이해해 확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시설 내의 부적절 케어를 막기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설 직원은 고령자 케어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대체로 평소 업무에 쫓기므로, 연수 등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케어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각 직원 사이, 직종 간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연간 계획이나 월간 계획을 작성한 다음, 계획적으로 시설 내 연수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가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연수 실시나 시설 외 연수에의 참가를 촉진하는 것으로써 재충전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과제의 발견이나 실천 활동에 이론상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직원의 기술수준이 높아져 시설 내 전체의 의식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시설 관리자는 직원이 연수 등에 참가하기 쉽게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시되어 온 제도, 체제 정비에 대해서는 관리자·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확실히 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대체로 제도·체제를 탁상으로 만든 것만으로 안심하기 쉽습니다만, 착실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등의 체크를 실시하는 것이, 관리직에게 요구됩니다.
- 직장의 민주적인 조직 만들기도 필요합니다. 문제 등이 있어도 쉽게 발언할 수 없는 분위기거나, 발언해도 묵살되어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민주적인 직장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각종 회의를 통해서 직장이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2) 집단케어에서 개별케어로

- 시설에서는 큰 규모의 집단을 전제로 케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콘베이어시스템의 작업적인, 합리화된 케어가 아니면 일을 해내지 못할 상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체 구속이나 심리적 학대라고 생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시설에는 고령자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한다고 하는 시점에서, 입소자 개개인의 개성과 생활 리듬을 존중한 개별 케어를 실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현재, 개별 케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유닛 케어를 도입하는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유닛 케어는, 종래의 집단적으로 제공되는 케어를 바꿔서 이용자를 몇 개의 소집단(유닛)으로 나누고, 「친숙한 관계와 가정적·개별적 케어」을 소중히 합니다. 이용자 개개인이 자신의 생활

을 만들어 내기 위한 관계 만들기·환경 만들기를 돕고, 자택에서 지냈었던 생활습관을 존중하면서 생활을 지지하여, 그 사람다움을 끌어내어, 생명을 빛나게 지지하기 위한 케어입니다.

3) 열린 시설 만들기

- 시설은 하나의 「집」으로서 내부 완결형이 되어 폐쇄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시설 견학이나 자원봉사를 받아들이고 지역과의 교류를 도모하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으면서, 직원의 의식개혁에 연결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시설의 정보 공개의 추진(자기 평가, 외부 평가의 도입 등), 음부즈맨제도의 도입 등을 시설 내에서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 사례

1) 사례1

- 신체적 학대
 - 입소자가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다고 하여 때리거나 꼬집는다.
 - 무리하게 식사를 입 속에 밀어 넣는다.
 - 휠체어 등을 타고 내리는 것을 도와줄 때 난폭하게 취급한다. 등
- 심리적 학대
 - 고함치고, 욕을 한다.
 - 말투나 이름을 불러 아이 취급을 한다.
 - 배설의 실패를 조소하거나 그것을 남의 앞에서 이야기하는 등으로 이용자에게 창피를 준다.
 - 배설을 도와줄 때, 「또 샐네」 「이상하다」 라고 모욕적인 말을 한다. 등
- 성적 학대
 - 함부로 배설을 했을 때, 벌을 준다고 허반신을 알몸으로 방치한다.
 - 목욕할 때 이성의 나체를 보이게 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한다. 등
- 경제적 학대
 - 이용자로부터 맡고 있는 돈, 통장 등을 착취한다.
 - 입소자의 사유물을 마음대로 착취하거나 소비한다. 등

○ 간호·보살핌의 방치·방임

- 적시에 기저귀 교환 등 필요한 케어를 실시하지 않는다.
- 입소자의 신체나 공간을 불결한 채로 방치한다.
-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기관의 진찰을 받지 않게 한다.
- 영양 면에서 배려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등

2) 사례2 : 부적절한 케어

- 신체 구속 (해당 이용자 또는 다른 이용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식사에 약을 섞어서 먹인다
- 방 안의 온도, 습도 등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
- 약을 잘못 전달한다
- 낙상 사고 등에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 부제자 투표 등의 때,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투표를 시키지 않는다.

3) 사례3

○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어머니가 요양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지만, 과거에 직원으로부터 봉으로 얻어맞아 그것이 원인으로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되어 구토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어, 체중이 15kg나 빠져 심하게 야위었다. 그 후, 주 1회의 상담으로 증상은 좋아졌지만,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것 같고 초조해하거나 쉽게 화를 낸다.

○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간호·보살핌의 방치·방임

요양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해 있을 때 화장실에 가려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대로 거기서 볼일을 보라」 고 한다든지 「소변을 보고 싶을 때에는 이미 볼일을 다 본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 또, 반신불수인데 굳이 호출 버튼이나 비디오투화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곳에 둔다. 이러한 일에 대해 불평을 늘어 놓고 싶었지만, 시설의 보복이 무서워 말할 수 없었다.

- 심리적 학대

인지증대응형(認知症対応型)고령자 그룹홈에 입주하는 이용자는 관리자가 지르는 큰 소리나 폭언에 의해 위축된다.

- 신체적 학대

시설 내에서 직원이 입소자를 때려 얼굴에 멍이 생길 정도의 폭력적 학대를 했다. 주임 등의 직원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학대행위를 한 직원에게는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엄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시설장에 진언 했지만 1주간의 근신 처분만 내려졌고, 시설장은 직원을 이 시설에서 근무시키는 가운데 재기하도록 하였다.

3. 외국의 시설 노인학대예방·해결제도 및 프로그램

가. 미국

1) 시설 노인 학대 발생률

- 1999-2000년 사이 전체 요양시설의 30.5%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활 노인에 대한 학대 발생

2) 노인학대 관련 법률

- 사회보장법, 성인보호서비스법, 노인복지법, 형법, 가정폭력방지법, 후견인 보호법, 시설학대법, 주 장기요양프로그램 관련법 등
- 노인학대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치는 주로 노인복지법 Title VII에 근거함
- 노인학대 문제에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노인정의법(Elder Justice Act)(안)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임

3) 노인학대 대처 조직 및 기구

- 연방정부 노인국(AoA)과 주 노인복지 담당부서, 국립노인학대센터(NCEA), 노인학대예방위원회(NCPEA), 노인학대 및 방임 정보센터(CANE), 성인보호담당관 협회(NAAPSA)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직 이외에, 성인보호기관, 주정부의 자격관리기관, 요양시설 질관리 위원회,

Medicaid 기관, Medicare Fraud Control Unit 등에서 시설 학대문제에 개입

4) 노인학대의 주요 프로그램

- 성인보호서비스, 정신건강사정서비스, 상담, 법적 지원(legal hotline or legal assistance developer), 장기옴부즈맨 프로그램, 게이트키퍼(gate keeper program) 등이 있음
- 가정내 노인학대를 예방·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 장기요양시설 생활노인의 학대와 관련해서는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Long Term Care Ombudsman Program:LTCOP) 실시

5)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노인법 Title VII chapter 3
- 프로그램의 목적: 노인법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시설의 불만사항 및 노인학대사례를 조사하고 해결함을 목적으로 함
- 역사: 1972년 노인법에 규정,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강화
- 재원: 연방정부 60%, 주정부 25%, 지역사회 재원이 15% 정도를 차지함
- 옴부즈맨의 책임과 역할
 - 생활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해 접수된 불만사항을 조사, 해결한다.
 - 거주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정부기관에 생활노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생활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법적, 기타 해결책을 강구한다.
 - 생활노인의 건강, 안전, 복지, 권리에 관련된 법과 규정들을 분석하고 논평하며 개정을 제안한다.
 - 장기요양보호에 관한 이슈와 관심사를 소비자와 일반 대중에게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법, 규정, 정책, 조치사항에 대한 대중의 논평을 촉진시킨다.
 -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발전을 촉진한다.
 - 생활노인의 안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노인 및 가족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 생활노인의 삶의 질과 케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화를 주창한다.

- 2000년 현재 591개의 지역사무소에서 15,497명의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급 직원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자원봉사자에 의해 활동이 이루어짐

6) 국립노인학대센터의 요양시설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권고(2002년)

- 학대 관련단체의 조정기능 강화
- 시설종사자에 대한 학대 교육과 훈련 강화
- 종사자의 소진(burnout)예방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
- 질 높은 서비스(good care) 제공에 적합한 시설 환경 개선
- 학대 신고의무자와 일반 대중에 대한 교육과 신고의무 기준의 엄격한 적용
- 학대 유경험자인 종사자(abusive nurse aides)의 재고용과 신규 종사자 채용시 고용기준 엄격 적용
- 시설운영위원회(resident councils)의 기능 강화

나. 일본

1) 노인학대 관련법

- 민법, 노인복지법, 개호보험법에 일부 노인학대 관련 조항이 있었지만, 2005년 11월 '고령자 학대 방지, 고령자 부양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설 생활노인의 학대에 대처
- 시설 학대의 유형: 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 방임,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로 규정(동법 2조)
- 시설 학대의 예방: 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수 실시, 시설생활노인의 고충처리체계의 정비,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 방지 조치의 강구를 규정(동법 20조)
- 시설 학대 발생시 대처방안: 생활노인 또는 시설종사자의 학대행위를 시정촌에 신고할 의무, 시정촌의 도도부현에 대한 학대발생 보고 의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시정촌과 도도부현의 신고된 학대사태에 대한 조치, 도도부현 지사의 시설학대 상황에 대한 공표 등을 규정(동법 21-25조)

2) 노인학대 대처 조직 및 기구

- 공적 노인복지전달체계: 시정촌(市町村)→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와 보고, 도도부현(都道府縣)→ 보고받은 사례에 대한 조치사항의 검토와 시설 학대 상황의 공표
- 1995년 노인학대 프로젝트에 의해 일본노인학대예방센터(JEAPE)을 설립하여, 학대 연구, 상담, 연수, 응급전화인 support line 운영

3) 노인학대의 주요 프로그램

- 노인권리옹호사업
- 재산상담기관
- 고령자 학대방지위원회의 help line, 노인학대예방센터의 support line, 생명의 전화 등의 전화상담
- 노인성추행방지프로그램
- 후견인지원센터
- 성년후견인제도: 노인 재산의 관리나 수발, 신상감호에 관한 대응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활용하는 제도
- 시설옴부즈맨 프로그램
 - 발달: 1997년 시작
 - 구성: 변호사가 2명, 대학의 교원 등 교육전문가가 4명, 시민이 2명, 사법서사가 1명, 전문직이 1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
 - 주요 활동: 시설에서의 학대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시설생활이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요청사항을 듣고,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을 제언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동(특히 생활노인과 종사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함)으로, 매월 옴부즈맨이 시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거나 가족간담회 및 직원회의에 참석
- 신체구속 제로 작전
 - 시설에서의 노인에 대한 신체적 구속이 ①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증상의 진행과 같은 신체적 폐해, ② 노인이나 가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의

가중과 같은 정신적 피해, ③ 개호보험시설에 대한 불신이나 편견 초래와 같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함

- 이에 후생노동성에서는 일시적으로 환자의 신체를 구속하고, 행동을 억제하는 신체적 구속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후생노동성 산하에 '신체구속 제로 작전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하고, 신체구속 제로 작전을 통하여 개호의 질적 향상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고령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
- 신체구속이 부당하거나 구속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생활노인과 가족은 그 의사를 시설 측에 명확히 전달하여야 함

다. 영국

1) 법적 근거

- 요양시설등록법(1991), 요양시설규제법(1984), 사회사업법(1968) 등에 근거하여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문제에 대처

2) 대처 조직

- Action on Elder Abuse(AEA; 노인학대 전국조직), Better Government for Older People(BGOP), Older People's Advisory Group(OPAG) 등

3) 노인학대 주요 프로그램 내용

- Action on Elder Abuse에서는 노인학대 인식개선, 교육, 연구, 학대 관련된 정보의 수집, 피학대 노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호사업, 무료 전화상담 (elder abuse helpline) 운영
- 사회보호감독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에 전화(helpline)로 신고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 보호,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함
- No Secret 프로그램: 2000년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학대노인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내 노인 보건복지, 노인학대 관련 기관간의 연계성(multi-agency)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라. 캐나다

1) 시설 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2) 노인학대 관련 법

- 형법, 성인보호법, 성인후견인법, 개정 요양시설법, 지역사회 보호시설법

3) 조직 및 기구

- 전국노인자문위원회, 국가노인학대센터(National Centre on Elder Abuse)

4) 주요 프로그램과 서비스

- 예방 프로그램: 학대 교육(노인, 부양자, 전문가, 일반인)
- 보호프로그램: 성인후견인제도, 성인보호프로그램(성인보호 입법, 건강 및 사회서비스), 학대 의무신고제, 옹호프로그램(Advocacy Centre for the Elderly), 통합적 다분야 팀접근(옹호, 건강보호 및 사회서비스 조정 등), 위기의 전화, 응급서비스, 노인시설의 노인학대 예방 옴부즈맨 제도(Elder Abuse Prevention Ombudsman), 지역변화인 부서의 법률 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 자살예방서비스, 심리평가

마. 호주

1) 정책 기본방향

- 학대보다는 권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과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근거하여 생활노인 권리보호에 주력하고 있음

2) 노인학대 관련법

- 노인보호법(1997),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

3) 조직 및 기구

- 노인보호자문위원회, 노인보호 고충해결기구(Aged Care Complaints Resolution Scheme), 노인보호사정팀(Aged Care Assessment Team)

4) 주요 프로그램과 서비스

- 노인보호사정팀: 노인학대에 대한 사정, 시설간 입소 의뢰, 사례조정, 권리옹호기관과의 연계활동
- 시설별 고충해결 절차(internal complaint resolution) 운영 의무화(노인보호법)
- 노인보호 고충해결위원회(The Aged Care Complaints Resolution Committees): 시설에서 해결되지 않아 전화(1800 550 552)로 신고, 접수된 권리 침해사례와 관련하여 협상, 중재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자의 생활노인 권리보장에 대한 책임 정도를 결정하고, 협상이나 중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시설로 의뢰 조치

<참고문헌>

1.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2. 보건복지부(2006).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3.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2007). 2007 사업보고 및 상담사례집
4. 高松市建康福祉部(平成18年). 高齢者虐待防止・對應 マニュアル
5. 掛川市高齢者支援菓(平成19年). 掛川市高齢者虐待防止 マニュアル
6. 高齢者虐待對應支援 マニュアル

부록



[부록 1]

사례의뢰서

의뢰기관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주소						
피해노인 관련정보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나이			연락처			
	주소						
	생활상태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고소득					
	행위자 동거여부	<input type="checkbox"/> 동거 <input type="checkbox"/> 비동거					
	가족사항	성명	관계	연락처	주소지	동거여부	비고
육구							
학대 행위자 관련정보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나이			연락처			
	주소						
	생활상태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고소득					
	피해노인과의 관계						
학대관련 정보	학대유형	<input type="checkbox"/> 신체적학대 <input type="checkbox"/> 언어·정서적학대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성적학대 <input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학대내용						

노인학대체크리스트

□ 신체적학대 (Physical Abuse)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노인을 폭행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발로 찬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주먹으로 폭행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목을 조른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몸을 발로 밟는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질질 끌고 다닌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핏줄이나 꼬집는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입으로 물어뜯는다. <input type="checkbox"/>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input type="checkbox"/>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input type="checkbox"/>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input type="checkbox"/> 담배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2.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낸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낸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예: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를 설치한다.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4.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input type="checkbox"/>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input type="checkbox"/>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5.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으로부터 단절시킨다.
6.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다.
7.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에게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또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정서적학대 (Emotional Abuse)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2.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input type="checkbox"/>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input type="checkbox"/>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3.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죽이겠다. 고 협박한다. <input type="checkbox"/>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에게 고향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에게 창피를 준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4. 노인과 관련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 성적학대 (Sexual Abuse)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p>1.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input type="checkbox"/>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 한다.
<p>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input type="checkbox"/>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input type="checkbox"/>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알몸으로 노출시켜 놓는다.

□ 경제적학대 (Financial Abuse/Exploitation)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p>1.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input type="checkbox"/>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input type="checkbox"/> 공적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input type="checkbox"/>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p>2.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 도용).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input type="checkbox"/>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input type="checkbox"/>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3.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 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input type="checkbox"/>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 방임 (Neglect)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input type="checkbox"/>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input type="checkbox"/>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2.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 <input type="checkbox"/>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4.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시에 따른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input type="checkbox"/>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input type="checkbox"/>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 유기(Abandonment)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input type="checkbox"/>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input type="checkbox"/>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부록 3]

노인학대 예방교육 신청서

신청기관 현황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주소		
신청교육 현황	교육일시	200 년 월 일 요일 시간(~)	소요시간 :
	교육장소		시청각교재 사용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교육대상		연령대 :
	예상인원		
기관약도			
기타사항			
위와 같이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기관명 : _____ (인)			

참고자료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법령³⁾

1.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타)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 9386호 시행일 2010.1.31]	노인복지법시행령 [(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 령 제21214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타)일부개정 2008.12.31 보건복지 가족부령 제84호]
<p>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³⁾본 사업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부분을 일부 발췌하였음.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 9386호 시행일 2010.1.31]</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p>
<p>제6조(노인의 날 등)</p> <p>①노인 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p> <p>②부모에 대한 ‘효’ 사상을 양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p> <p>③항 생략</p> <p>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p>제39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 등)</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20조의3 (긴급전화의 설치 운영) ①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 9386호 시행일 2010.1.31]</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p>
<p>제 39 조의 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p> <p>제 20 조의 4(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 법 제39조의 5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2. 법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p>제2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법 제 39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 10의 4와 같다.</p> <p>제 29 조의 6(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 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 9386호 시행일 2010.1.31]</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p>
<p>②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제 20 조의 5(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법 제39조의 5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법」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2.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의료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p>②영 제 20 조의 4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0 호의 9 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시설신고증 사본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4.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평면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 9386호 시행일 2010.1.31]</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p>
	<p>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4호 생략</p> <p>5.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p>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p>	<p>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업무범위 및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20호의 10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 11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노인복지법 [(타)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 9386호 시행일 2010.1.31]	노인복지법시행령 [(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타)일부개정 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
<p>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p> <p>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 9386호 시행일 2010.1.31]</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p>
<p>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 복지전담공무원</p> <p>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 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 서는 아니 된다.</p> <p>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p> <p>①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 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 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 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 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 도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 9386호 시행일 2010.1.31]</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p>
<p>제 39조의 8(보조인의 선임 등)</p> <p>①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p> <p>③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p> <p>제39조의9(금지행위)</p> <p>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 9386호 시행일 2010.1.31]</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p>
<p>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p> <p>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p> <p>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p> <p>제39조의11(조사 등)</p> <p>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항 생략</p>		<p>제29조의7(증표) 법 제39조의 11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 9386호 시행일 2010.1.31]</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 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른 증표의 내 용·형식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 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p> <p>①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 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 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지 못한다.</p> <p>②항 생략</p> <p>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 9 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 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55조의3(벌칙)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p> <p>1.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 9386호 시행일 2010.1.31]</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p>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복지법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타)일부개정 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p>
<p>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p> <p>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p>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생략 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

<p style="text-align: center;">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10호, 2007.8.3 제정, 2008.8.4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14호, 2008.2.20 제정, 2008.8.4 시행)</p>
<p>제1조(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2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p>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10호, 2007.8.3 제정, 2008.8.4 시행)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14호, 2008.2.20 제정, 2008.8.4 시행)
<p>②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가족부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p> <p>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 생략</p> <p>제8조 생략</p>	<p>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10호, 2007.8.3 제정, 2008.8.4 시행)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14호, 2008.2.20 제정, 2008.8.4 시행)
<p>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p> <p>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p> <p>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p>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4조 생략</p> <p>제15조 생략</p>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법조항		관련내용	처벌	비고
제2장 가정보 호사건	가정폭력범죄 에 대한 응급조치 (제5조)	<p>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 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포역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고소에 관한 특례 (제6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8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 검사는 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 제4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제4호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법조항	관련내용	처벌	비고
비밀엄수등의 의무 (제18조)	<p>①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또는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 및 제4조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1년 이하 징역이나 2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장 가정보호 사건 임시조치 (제29조)	<p>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예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보호처분의 변경 (제45조)	<p>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0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기간은 1년을, 동항제3호의 사회봉사·수감명령기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p> <p>③ 제1항의 처분변경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p>		

4. 형법

법조항		관련내용	처벌	비고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 존속상해 (제257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57조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때 ○ 미수범 동일 처벌
	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 제3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때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 제258조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 제258조제2항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상해치사 (제259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269조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
	폭행, 존속폭행 (제260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60조제1항 사람의 신체 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유기, 존속유기 (제271조)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 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제271조제1항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 는 자를 보호할 법률 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
		④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 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학대, 존속학대 (제273조)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였을 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 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조항		관련내용	처벌	비고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유기등 치사상 (제275조)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상해-7년 이하의 징역 사망-3년 이상의 유기 징역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 게 한 때	상해-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사망-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6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 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76조제1 항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
제30장 협박의 죄	협박, 존속협박 (제283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 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의 벌금	제283조제1 항 사람을 협박한 때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였을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동일처벌
	강제추행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준강간, 준강제추 행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였을 때	전 2조의 예에 의함	
	강간 등 상해·치 상 (제301조)	미수범을 포함하여 제297조 내지 29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해·치 사 (제301조 의 2)	미수범을 포함하여 제297조 내지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혹은 사망에 이 르게 한 때	살해-사형 또는 무기 징역 사망-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 정신보건법

법조항		관련내용	처벌	비고
제3장 보호 및 치료	응급입원 (제26조)	<p>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함</p> <p>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음</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 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함</p>		

6. 경찰관직무집행법

법조항	관련내용	처벌	비고
위험발생의 방지 (제5조)	<p>①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 가능</p> <p>②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p>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	<p>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p>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p>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거 내에 출입할 수 있음</p>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2009년 4월 현재)

시 도	주 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중앙 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 영등포구 당산6가 121-146	www.noinboho.or.kr	02)3667-1389
서울특별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 서초구 방배2동 3274	www.seoul1389.or.kr	02)3472-1389
부산광역시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부산 동구 초량3동 172-2	www.bs1389.or.kr	051)468-8850
부산광역시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260-5	1389.bulgukto.or.kr	051)867-9119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대구 남구 이천동 381-9	www.dg1389.or.kr	053)472-1389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천 남동구 간석3동 산27-5	www.ic1389.or.kr	032)426-8792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광주 남구 사동 57-1	www.kj1389.or.kr	062)655-4155
대전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대전 서구 둔산동 1389	www.dj1389.org	042)472-1389
울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울산 남구 야음2동 577-6	www.ulsan1389.or.kr	052)265-1389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삼성동 2178	www.kg1389.or.kr	031)735-3790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 226-10	www.gnnoin.kr	031)821-1461
강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강원 춘천시 후평1동 710-4	www.1389.or.kr	033)253-1389
충청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보건로 25번지	www.cb1389.or.kr	043)259-8120
충청북도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충북 충주시 아현로 149번지	www.cbb1389.or.kr	043)846-1380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충남 아산시 온천1동 232-2	www.cn1389.or.kr	041)534-9222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66-8	www.jb1389.or.kr	063)273-1389
전라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남 순천시 인제동 101-6	www.jn1389.or.kr	061)753-1389
경상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동 69-4	www.noin1389.or.kr	054)248-1389
경상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경남 마산시 평화동 4-3	www.gn1389.or.kr	055)222-1389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44-1	www.jejunoin.org	064)757-3400

노인시설·사회복지기관용
노인학대예방 업무매뉴얼

- 발 행 일 2009. 4
- 발 행 인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김상수
- 발 행 처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A. 충북 청주시 상당구 보건로 25번지 (수동 138-8번지)
T. 043) 259 - 8120~2 F. 043) 259- 8127
H. www.cb1389.or.kr E. cb1389@hanmail.net

